군형법



[시행 2016. 11. 30.] [법률 제14183호, 2016. 5. 29., 타법개정]

국방부 (군사법정책담당관) 02-748-6811

제1편 총칙 <개정 2009. 11. 2.>

- 제1조(적용대상자)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.
 - ② 제1항에서 "군인"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병(兵)을 말한다. 다만, 전환복무(轉換服務) 중인 병은 제외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<개정 2016. 5. 29.>
 - 1. 군무원
 - 2. 군적(軍籍)을 가진 군(軍)의 학교의 학생・생도와 사관후보생・부사관후보생 및「병역법」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(在營) 중인 학생
 - 3.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·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
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 - 1.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
 - 2. 제42조의 죄
 - 3.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, 제58조,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
 - 4.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
 - 5.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
 - 6. 제77조의 죄
 - 7. 제78조의 죄
 - 8.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
 - 9.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
 - 10.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
 - 11. 제59조제1항의 미수범
 - 12.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
 - 13.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
 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·소집해제·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조의2(장소적 적용범위)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(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)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상관"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.
- 2. "지휘관"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(艦船)부대의 장 또는 함정(艦艇)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초병(哨兵)"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,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 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"부대"란 군대,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(戰時) 또는 사변 시에 이에 준하여 특별히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5. "적전(敵前)"이란 적에 대하여 공격·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.
- 6. "전시"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(對敵)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- 7. "사변"이란 전시에 준하는 동란(動亂)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.

제3조(사형 집행)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4조(다른 법의 적용례)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2편 각칙 <개정 2009. 11. 2.>

제1장 반란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5조(반란) 작당(作黨)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수괴(首魁): 사형
- 2.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,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: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
- 3. 반란에 부화뇌동(附和雷同)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: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[전문개정 2009. 11. 2.]
- **제6조(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)**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,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(供)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7조(미수범) 제5조와 제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8조(예비, 음모, 선동, 선전)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. 다만,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
 -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9조(반란 불보고)** ①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0조(동맹국에 대한 행위)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.

제2장 이적(利敵)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- **제11조(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)** ① 군대 요새(要塞), 진영(陣營)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,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.
 - ② 병기,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2조(군용시설 등 파괴)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사람은 사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13조(간첩)**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,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
 -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 - 1. 부대・기지・군항(軍港)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
 - 2. 부대이동지역·부대훈련지역·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
 - 3.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14조(일반이적)**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1.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
 - 2.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
 - 3. 적을 숨기거나 비호(庇護)한 사람
 - 4. 적을 위하여 통로, 교량, 등대,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,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
 - 5.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,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,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
 - 6. 적을 위하여 부대, 함대(艦隊), 편대(編隊)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
 - 7.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,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
 - 8.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5조(미수범)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16조(예비, 음모, 선동, 선전)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다만,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
 -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
제17조(동맹국에 대한 행위)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18조(불법 전투 개시)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9조(불법 전투 계속)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(講和)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20조(불법 진퇴)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, 함선 또는 항 공기를 진퇴(進退)시킨 경우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21조(미수범)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22조(항복)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, 요새, 진영,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(放任)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23조(부대 인솔 도피)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24조(직무유기)**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(遺棄)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의 경우: 사형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
 - 3. 그 밖의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25조(미수범)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26조(예비, 음모)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5장 수소(守所) 이탈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27조(지휘관의 수소 이탈)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적전인 경우: 사형
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
- 3. 그 밖의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

- **제28조(초병의 수소 이탈)**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3. 그 밖의 경우: 2년 이하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29조(미수범)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6장 군무 이탈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30조(군무 이탈)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5년 이상의 유기징역
- 3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-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31조(특수 군무 이탈)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32조(이탈자 비호)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5년 이하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33조(적진으로의 도주)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34조(미수범)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7장 군무 태만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35조(근무 태만) 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(兵員)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(危難)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
- 3.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연히 감당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사람
- 4. 군사기밀인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 한 사람
- 5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, 탄약, 식량,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없애거나 모자라게 한 사람

- **제36조(비행군기 문란)** 비행(飛行)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
 - 3. 그 밖의 경우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37조(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)**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(航行)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38조(거짓 명령, 통보, 보고)** ① 군사(軍事)에 관하여 거짓 명령,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7년 이하의 징역
 - 3. 그 밖의 경우: 1년 이하의 징역
 - ② 군사에 관한 명령,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39조(명령 등의 거짓 전달)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,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40조(초령 위반)**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5년 이하의 징역
 - 3. 그 밖의 경우: 2년 이하의 징역
 -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41조(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)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그 밖의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
-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(僞計)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- 1. 적전인 경우: 10년 이하의 징역
-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하의 징역

제42조(유해 음식물 공급)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-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-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43조(출병 거부) 지휘관이 출병(出兵)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8장 항명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44조(항명)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
- 3. 그 밖의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45조(집단 항명)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수괴는 사형,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
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,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
- 3. 그 밖의 경우: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,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46조(상관의 제지 불복종)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47조(명령 위반)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9장 폭행, 협박, 상해 및 살인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48조(상관에 대한 폭행, 협박)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- 2. 그 밖의 경우: 5년 이하의 징역

- **제49조(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, 협박 등)**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,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,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- **제50조(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, 협박)**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51조 삭제 <2009. 11. 2.>

- **제52조(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)** 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3. 그 밖의 경우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②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(제49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52조의2(상관에 대한 상해)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52조의3(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) ① 집단을 이루어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,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,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2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5로 이동 <2009. 11. 2.>]

- **제52조의4(상관에 대한 특수상해)**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종전 제52조의4는 제52조의6으로 이동 <2009. 11. 2.>]

- **제52조의5(상관에 대한 중상해)** 제52조제2항 및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. 다만,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3. 그 밖의 경우(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)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[전문개정 2009. 11. 2.]

[제52조의3에서 이동 <2009. 11. 2.>]

- **제52조의6(상관에 대한 상해치사)**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3. 그 밖의 경우(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)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[제52조의4에서 이동 <2009. 11. 2.>]

- 제53조(상관 살해와 예비, 음모)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54조(초병에 대한 폭행, 협박)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7년 이하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5년 이하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55조(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, 협박 등)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,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,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56조(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, 협박)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57조 삭제 <2009. 11. 2.>

제58조(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) ①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3. 그 밖의 경우: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제55조 또는 제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②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. 다만, 제55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2. 그 밖의 경우(제55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중 수괴는 제외한다): 1년 이상의 유기징역 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58조의2(초병에 대한 상해)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-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58조의3(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) ①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,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그 밖의 경우: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,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
-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 <2009. 11. 2.>]

제58조의4(초병에 대한 특수상해)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그 밖의 경우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<2009. 11. 2.>]

제58조의5(초병에 대한 중상해) 제58조제2항,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그 밖의 경우: 2년 이상의 유기징역

[전문개정 2009, 11, 2,]

[제58조의3에서 이동 <2009. 11. 2.>]

제58조의6(초병에 대한 상해치사)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제58조의 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3. 그 밖의 경우: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[제58조의4에서 이동 <2009. 11. 2.>]

제59조(초병살해와 예비, 음모)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60조(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, 협박 등)**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(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. 이하 "군인등"이라 한다)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7년 이하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제2항 또는 제 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3. 그 밖의 경우: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60조의2(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)**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1년 이상의 유기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60조의3(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)** ①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 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[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4로 이동 <2009. 11. 2.>]

- **제60조의4(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)** 제60조제5항,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제2항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2년 이상의 유기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[제60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60조의4는 제60조의5로 이동 <2009. 11. 2.>]

- **제60조의5(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)**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적전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3. 그 밖의 경우: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,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[제60조의4에서 이동 <2009. 11. 2.>]

- **제60조의6(군인등에 대한 폭행죄, 협박죄의 특례)**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「형법」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1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
 - 2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
 - 3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
 - 4. 군용에 공하는 함선

[본조신설 2016. 5. 29.]

- 제61조(특수소요)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,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수괴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 - 2.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,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: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 - 3. 부화뇌동한 사람: 2년 이하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62조(가혹행위)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전문개정 2009. 11. 2.]
- **제63조(미수범)**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, 제53조제1항,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, 제59조제1항,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0장 모욕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64조(상관 모욕 등)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 - ② 문서, 도화(圖畵) 또는 우상(偶像)을 공시(公示)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(公然)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 -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 -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제65조(초병 모욕)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<개정 2009. 11. 2.>

- **제66조(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)** ① 불을 놓아 군의 공장, 함선,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, 기차, 전차, 자동차, 교량을 소훼(燒훼)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②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
 - 2.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67조(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)** 불을 놓아 노적(露積)한 병기, 탄약, 차량, 장구(裝具), 기재(器材), 식량, 피복 또는 그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68조(폭발물 파열) 화약, 기관(汽罐) 또는 그 밖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물건을 소괴한 사람도 제66조 및 제67조의 예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69조(군용시설 등 손괴)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,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70조(노획물 훼손) 적과 싸워서 얻은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**제71조(함선・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)** ① 취역(就役)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(覆沒)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②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.
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72조(미수범)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・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- 제73조(과실범)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74조(군용물 분실) 총포, 탄약, 폭발물, 차량, 장구, 기재, 식량,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75조(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) ① 총포, 탄약, 폭발물, 차량, 장구, 기재, 식량,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「형법」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 - 1. 총포,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- 2. 그 밖의 경우: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
 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「형법」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.
 -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76조(예비, 음모)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 다만,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. [전문개정 2009. 11. 2.]
- **제77조(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)**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2장 위령(違令)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78조(초소 침범)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

- 1. 적전인 경우: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
- 2. 전시,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
- 3. 그 밖의 경우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79조(무단 이탈)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80조(군사기밀 누설)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 -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81조(암호 부정사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
- 2. 암호를 수신(受信)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
- 3.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

제13장 약탈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- **제82조(약탈)**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(掠取)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[전문개정 2009. 11. 2.]
- 제83조(약탈로 인한 치사상)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.
 -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[전문개정 2009. 11. 2.]
- 제84조(전지 강간)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. <개정 2013. 4. 5.>
 - ② 삭제<2013. 4. 5.>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85조(미수범)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86조(포로) 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우군(友軍)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는데도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우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87조(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)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- 제88조(포로 도주 원조)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 -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89조(포로 탈취) 포로를 탈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90조(도주포로 비호)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91조(미수범)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<개정 2009. 11. 2.>

제92조(강간)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3. 4. 5.>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92조의2(유사강간)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[본조신설 2013. 4. 5.]

[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3으로 이동 <2013. 4. 5.>]

제92조의3(강제추행)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제92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<2013. 4. 5.>]

제92조의4(준강간, 준강제추행)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,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. <개정 2013. 4. 5.>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제92조의3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<2013. 4. 5.>]

제92조의5(미수범) 제92조,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<개정 2013. 4. 5.>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제92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5는 제92조의6으로 이동 <2013. 4. 5.>]

제92조의6(추행)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3. 4. 5.>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제92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<2013. 4. 5.>]

제92조의7(강간 등 상해 · 치상)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3. 4. 5.>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제92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7은 제92조의8로 이동 <2013. 4. 5.>]

제92조의8(강간 등 살인·치사)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2013. 4. 5.>

[본조신설 2009. 11. 2.]

[제92조의7에서 이동, 종전 제92조의8은 삭제 <2013. 4. 5.>]

제16장 그 밖의 죄 <신설 2009. 11. 2.>

제93조(부하범죄 부진정)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(鎭定)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1. 2.]

제94조(정치 관여)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지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
- 1.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
- 2.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,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- 3.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및 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
- 4.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
- 5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
- 6.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(告知)하는 행위
-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「군사법원법」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4. 1. 14.]

부칙 <제14183호,2016. 5. 29.>(병역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3항제3호 중 "실역(實役)에 복무하고"를 "복무하고"로, "제2국민역"을 "전시근로역"으로 한다.

⑩부터② 까지 생략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